



# 인터넷 시대의 저작권 보호

이길용 |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 I. 저작 소유권(copyright)과 정보 공유권(copyleft)의 충돌

전세계 문화 콘텐츠 산업의 시장 규모는 1조 186억 달러(1,222조 3,20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러한 문화 콘텐츠 산업의 성장 배경에는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 기술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기술이 아직은 보급 단계임을 감안하면 앞으로 세계 문화 콘텐츠 산업의 시장 규모는 엄청날 것 같다. 문화 콘텐츠 산업 분야에서 서구 선진국들에 비해 열세인 우리나라가 시장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의 개발 인력을 양성하고 콘텐츠 개발의 육성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콘텐츠의 저작자 및 제작자의 법적 보호 문제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오늘날 컴퓨터 기술의 혁명적 발달은 정보에 대한 복제를 매우 손쉽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통신 기술의 혁명적 발달은 복제한 정보를 국경을 초월하여 널리 자신이 원하는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

에게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발달된 컴퓨터·통신 기술의 융합으로 탄생한 것이 인터넷이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타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자신의 정보를 전파할 수 있다. 인터넷은 정보의 유통 즉, 정보의 수집과 전파를 원활히 하여 우리에게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여론 형성 또는 자아실현의 도구로서 또 문화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써 많은 효용을 제공한다. 실제로 인터넷이 정보 공유를 가능케 하여 우리 삶에 근본적인 변혁을 가져오고 있음을 부인할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환경을 일컬어 인터넷 시대라 부른다. 그러나 인터넷은 정보의 수집과 전파를 매개하는 하드웨어일 뿐이다. 하드웨어가 잘 갖추어졌다고 인터넷 시대라고 할 수는 없다. 진정한 인터넷 시대란 인터넷이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타고 흐르는 소프트웨어인 정보가 풍부하고 이 풍부한 정보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때 가능하다. 따라서 인터넷 시대의 본질은 정보가 얼마만큼 원활히 확보되느냐에 달려 있다.

1) 한국일보, 2001. 2. 13자 1면

이에 비하여 우리 나라는 문화관광부가 2001. 2. 12. 발표한 "2000 문화 산업 통계"에 따르면 1999년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음반 게임 등 5개 주요 문화산업의 총매출액은 4,962억으로서 세계 문화 콘텐츠 산업 시장 규모의 0.3%에 불과하다고 한다.

2) '콘텐츠'란 넓은 의미에서 정보 등을 포함하는 내용물을 가리키지만 이 글에서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의 개념으로 한정하여 사용한다.

그런데 정보라고 하는 것 중 대부분은 인간의 사상·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된 노력의 산물이다. 이 인간의 사상·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된 노력의 산물을 저작물이라고 한다. 인터넷에 유통되어 우리에게 커다란 효용을 주는 것도 바로 이 저작물이다. 저작물이 원활하게 창작되어 유통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하고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진정한 인터넷 시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현재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은 저작자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할 배타적 권리가 부여되는 바, 이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는 민·형사적 구제를 받는 것이다. 저작자에 대한 이러한 보호는 창작적 노력에 대한 보상을 통해 저작물의 창작을 고무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래야만 일반 국민들이 양질의 풍부한 저작물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각국 저작권법의 제정 목적에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저작권 보호에 대해 소위 산업계에서는 첨단 기술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정보 공유(copy-left)를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정보 공유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 공유가 타인이 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노력을 통해 창작한 저작물에게까지 행해져야 한다고 하는 주장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현대 사회에서 저작자도 하나의 독자적인 경제 활동 주체로서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저작자의 권리 보호가 없다면 저작자는 더 이상 독자적인 경제 활동 주체로서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은 곧 저작자의 저작물 창작 의욕의 감소로 이

어져 창작물 창작 기반이 붕괴될 것이다. 세계 각국의 수세기 전부터 저작자의 권리를 재산권의 하나로 보호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이러한 저작자의 권리 보호는 최근 들어 인터넷의 발달로 시련을 겪고 있다. 바로 정보의 복제를 매우 손쉽게 하는 컴퓨터의 발달과 복제한 정보를 신속하게 국경을 초월하여 널리 자신이 원하는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수 있게 하는 인터넷의 특성이 저작자에게 저작권 침해의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는 인터넷상의 저작물 이용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거나 이를 규율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용자들의 의식에 상당 부분 기반하고 있다. 그래서 인터넷 시대를 지적 소유권(copyright)과 정보 공유권의 충돌 시대라고 표현하는 이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 등 각국에서 음반 협회와 맵스터, 영화 협회와 닷컴사 등의 법정 쟁송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사실 인터넷의 익명성과 침해자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해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가 쉽지 않다는 점은 있다. 그러나 인터넷상에서의 저작물 이용 행위도 명백히 현행 저작권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오늘날 인터넷 환경에서 저작물의 불법 복제는 대량으로 이루어지고, 그러한 불법 복제 행위를 차단하는 것조차 어렵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저작권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방법으로는 미국 저작권법 제 540조에서 두고 있는 법정 손해배상금 제도<sup>3)</sup>를 도입하는 방법을 고

3) 법정 손해배상금 제도란 등록된 저작물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법원이 750달러~3만 달러 사이에서 손해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제도로서, 저작권자가 입증 책임을 다하고 침해자가 고의에 의하여 침해를 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정 손해 배상금은 15만 달러까지 인상할 수 있다. 법정 손해 배상금의 한 가지 가장 큰 특징은 손해액이 있건 없건 간에 등록된 저작물이 침해된 때에는 최저 750달러 이상의 손해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점이다. 아울러 미국 저작권법은 등록된 저작권자는 그 침해자를 상대로 법정 손해 배상금의 청구는 물론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다(미국 저작권법 제 505조).

려해 봄직하다.

## II. 인터넷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 문제

저작물의 접근과 이용을 매우 쉽게 만드는 디지털 및 인터넷 환경에서 저작권의 보호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우리 저작권법이 현실에 맞게 개정되기는 했지만<sup>4)</sup> 국제 조약이나 외국의 입법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 보호에 미흡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예컨대 기술 조치, 저작권 권리 관리 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링크 등의 보호 문제 등이 바로 그러하다. 이와 관련하여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 1. 기술 조치

기술 조치란 쉽게 말하면 저작물의 무단 이용이나 접근 등을 제한하기 위하여 저작권자가 취한 기술 조치를 말한다. 이러한 기술 조치의 종류에는 연속적인 복제를 금지하는 SCMS, 복제할 경우 복제

물의 질을 떨어뜨리는 CGMS, 복제물의 구동을 금지하는 장치, 일정 횟수만 인스톨하게 하는 장치, 디지털 문신(steganography), 디지털 서명, 특정 시스템에서만 작동하는 장치, 접근을 통제하는 암호 장치 등 다양한 형태의 기술 조치들이 있다.

저작권자들은 인터넷 환경에서 자신들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커지자 각종 기술 조치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술 조치도 해체 또는 해체에 노출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커져 저작권의 보호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sup>5)</sup>, WIPO 저작권 조약<sup>6)</sup>, 미국 저작권법<sup>7)</sup> 등에서는 이미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 조치를 보호하고 있으나, 국내 저작권법에는 아직 관련 규정이 없다.

기술 조치는 인터넷 환경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저작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기술 조치의 보호는 당연하다.

2001. 4. 6. 정부는 국내 저작권법의 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를 하였다. 다행히 이번 개정에서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 조치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삽입하여 저작권 보호를 위해

- 4)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자는 저작 재산권자로서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연·방송·전송·전시할 권리 및 2차적 저작물 등으로 작성할 권리를, 저작 인격권으로서 저작물의 공표권, 성명 표시권 및 동일성 유지권을 갖는다. 특히 저작 재산권 중 전송권은 2000. 1. 12. 개정 저작권법에 의하여 도입된 권리로서 PC통신망이나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의 무단 유통을 금지한다. 그 동안 전송권이 없다는 이유로 저작권법이 인터넷 환경에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게 되었다.
- 5) 제 30조. 동 법은 '프로그램에 관한 식별 번호·고유 번호 입력, 암호화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호하는 조치'를 '기술적 보호조치'라고 정의하고(제 2조 제 9호), 이를 정당한 권원 없이 회피, 제거, 손괴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시키거나, 기술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장치·부품·프로그램 등을 대여, 유통, 전송, 배포하는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제 30조 및 제 46조)
- 6) 제 11조. 계약 당사자는 이 조약 또는 배른협약상의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저작자가 이용하는 효과적인 기술 조치로서 자신의 저작물에 관하여 저작자가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기술 조치를 우회하는 것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 7) 제 1201조. 동 조는 기술 조치를 회피, 우회, 제거, 무력화 또는 달리 손상시키는 것을 기술 조치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를 우회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의 위반을 금지하며,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 조치(제 1203조) 및 형사 조치(제 1204)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서는 다행이 아닐 수 없다.

## 2. 저작권 관리 정보

저작권 관리 정보란 저작물, 저작물의 저작자 및 저작권자 등을 식별하는 정보, 저작물의 이용 정보 등을 말한다. 이러한 정보는 디지털 저작물에 직접 표기되기도 하나 별도의 파일로 묶어서 제공되기도 한다.

PC 통신이나 인터넷 환경에서 이러한 정보가 쉽게 변형되거나 삭제되는 경우 저작권자, 저작권 집중 관리 업자, 또는 선의의 이용자는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고, 저작권 질서는 문란해진다. 특히, PC 통신이나 인터넷 환경에서는 저작권 관리 정보가 악의로 변경될 소지가 많고, 이러한 행위에 의한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안전 장치가 요구된다.

현재, 국내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sup>8)</sup>, WIPO 저작권 조약<sup>9)</sup>, 미국 저작권법<sup>10)</sup> 등에서는 저작권 관리 정보의 보호를 위한 장치를 두고 있으나, 국내 저작권법에는 아직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 그러나 기술 조치와 마찬가지로 최근 개정 준비 중에 있는 저

작권법에는 저작권 관리 정보의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두고 있어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다행이다.

## 3.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란 '전자적 수단 또는 기타 수단으로 개별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구축된 정보의 수집물'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데이터베이스는 많은 정보를 한 군데 모아 놓고 검색에 의하여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을 위해서는 매우 편리한 서비스 시스템이다.

현재, 데이터베이스는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때에 저작권법에 의하여 편집 저작물로 보호받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그다지 많은 편이 아니어서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상당한 인력과 자본을 투입하여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이러한 한계성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많은 논의가 국내외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다.<sup>11)</sup>

8) 제 29조 제 4항 제 3호. 동 법은 원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에 포함되거나 전송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것으로서 프로그램, 프로그램 저작자의 권리 및 이에 관하여 독점적으로 복제·배포할 수 있는 권리와 그 보유자,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 및 조건에 관한 정보 또는 당해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나 부호라고 정의하고(제 2조 제 8호), 이러한 정보를 악의로 변경하는 행위를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행위를 민사 및 형사 조치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제 29조 제 4항, 제 32조 및 제 46조 제 3항 제 4호).

9) 제 12조. 동 조는 저작물의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저작물의 공중 전달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것으로서 저작물, 저작물의 저작자 및 저작물의 권리자를 식별하는 정보 또는 저작물의 이용 조건에 관한 정보 및 그러한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나 부호를 '권리 관리 정보'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정보를 권한 없이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또는 권리 관리 정보가 권한 없이 제거되거나 변경된 것을 알면서 저작물이나 복제물을 권한 없이 배포하거나 배포하기 위하여 수입, 방송 또는 공중에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10) 제 1202조. 동 조는 저작권 관리 정보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또는 허위의 저작권 관리 정보를 제공, 배포, 배포를 위하여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민사 및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제 1202조, 제 1203조, 제 1204조).

11) 채명기·이영록(2000, 12), 『데이터베이스의 추가 보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저작권 연구 자료 34) 참조.

국제적으로 1996. 12. 채택된 WIPO 저작권 조약의 초안<sup>12)</sup>에는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위한 규정이 삽입되어 있었으나, 각국의 견해 차이로 누락되고 말았다. 이후 이 문제에 대해서는 WIPO가 주축이 되어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다.<sup>13)</sup>

지역적으로 유럽연합은 1996. 3. 11.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를 위한 지침을 채택하였는데, 이 지침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게 데이터베이스의 상당 부분을 발췌하거나 재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할 독자적 권리(suigeneris)를 부여하고 있다. 이 지침은 1998. 1. 1. 이후부터 EU 회원국이 자국법을 개정하여 시행하도록 하였고, 현재 15개 회원국 대부분이 이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을 제외하면 현재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국가는 쉽게 찾아볼 수 없다. 미국은 수 차례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법안들이 의회에 제출되었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고,<sup>14)</sup> 일본과 우리나라는 아직 논의 단계에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 창작성이 없거나 낮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보호 형식이나 절차에 있어서는 이견<sup>15)</sup>을 보이고 있다.

국내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추가 보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이상 이제는 보호의 형식과 방법에 있어서 견해 차이를 좁힐 때인 것 같다. 특히, 유럽연합 국가들은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를 위하여 재산권 모델을 선택하였고, 그 방법에 있어서 재산권 모델을 취하였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부에서는 부정경쟁 모델을 취하고 공정 사용의 폭을 대폭적으로 넓힌 미국식 방법을 선호하고 있으나, 미국이 그러한 입장을 취하게 된 이면에는 데이터베이스의 시장 장악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의견이 독일 등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아무튼 데이터베이스의 추가적인 법적 보호는 필요하며, 그 형식과 방법에 있어서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본다.

#### 4. 링크

저작권 문제의 대상이 되는 링크는 크게 하이퍼링크와 프레임 기법에 의한 링크로 구분할 수 있다. 하이퍼링크란 타인의 홈페이지나 웹페이지 또는 웹페이지에 수록된 저작물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연결시키는 것을 말하고, 프레임 링크란 자신의 홈페이지 화면을 둘 이상의 창으로 나눈 후에 하나의 창에 타인의 홈페이지나 웹페이지 또는 웹페이지를 연결시켜 자료가 현시(顯示)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두 링크 방법 모두 타인의 웹사이트에 수록된 특정 저작물에 연결시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연결된 타인의 저작물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현시되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하이퍼링크는 링크

12) WIPO, CRNR/DC/6.

13) 보다 자세한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채명기, 이영록, 앞의 연구논문, 22~26쪽 참조.

14) 위의 논문, 30~43쪽 참조.

15) 여기서 이견이란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형식과 방법에 대한 것이다. 예컨대, 데이터베이스를 재산권 모델로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부정 경쟁 모델로 보호할 것인가의 형식적인 문제와 데이터베이스를 기존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호할 것인가 하는 방법상의 문제에 있어서 견해 차이를 말한다(위의 논문, 95~100쪽 참조).

표시를 클릭하는 경우 타인의 사이트로 완전히 이동하는데 반하여, 프레임 링크는 링크 표시를 클릭하는 경우 자신의 홈페이지는 그대로 표시된 상태에서 특정 창에 연결된 타인의 저작물이 표시되기 때문에 마치 자신의 사이트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이 인용된 것과 같은 느낌을 준다.

따라서 하이퍼링크는 저작권 침해 문제와는 거리가 있으나 프레임 링크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다만, 프레임 링크를 할 경우 저작권의 어떤 내용에 대한 침해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의 대립이 있다. 프레임 링크는 자신의 모니터에 나타나는 최종 결과를 기준으로 할 때 오프라인 매체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저작권 침해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링크된 홈페이지의 모습을 축소·변경시키거나 원래의 프레임과 다른 프레임과 결합되어 표시되도록 함으로써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의 침해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이용되는 자료에 대한 URL이 표시되지 않고 자신의 홈페이지의 URL이 표시되므로 성명 표시를 다르게 한 경우와 유사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견해<sup>16)</sup> 등이 대립하고 있다.<sup>17)</sup>

어떤 형태의 저작물 이용이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저작물이 이용되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프레임 링크가 성명 표시권의 침해라는 견해는 저작물의 이용을 전제로 성명 표시권의 침해를 판단하였으면서도 저작 재산권의 침해는 형성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자체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사실 프레임 링크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타인의 저

작물을 연결시켰을 뿐 직접 수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작물의 직접 이용 행위는 없다. 다만, 프레임 링크는 타인의 저작물의 화면에 나타난 결과를 놓고 판단할 때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 행위로 볼 수 있어서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저작권 보호, 특히 경쟁 관계에 있는 저작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프레임 링크의 금지를 위한 법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 Ⅲ. 인터넷 시대의 저작권 등록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는 침해임을 알면서도 불가피하게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인터넷의 특성이 다량·다양한 정보를 신속히 이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인터넷상 유통되는 정보의 출처나 권리 관계가 명확치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전한 인터넷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침해적 환경을 바꾸는 것이 필수적이다.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에 강력한 구제 수단이 있다. 그러나 건전한 사회 환경이란 법적 구제 수단을 통해 침해를 구제하는 것보다는 그 예방을 통해 형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저작권 침해의 예방에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저작권 등록을 통한 공시이다.

저작자는 저작권 등록을 통해 자신의 저작물과 관련한 저작자 정보 또는 저작권 정보를 널리 일반 공중에게 알림으로써 저작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상의 저작물 이용은 다중·다양한 저작물을 신속히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다.

16) 오승중·이해완(2000), 『저작권법』, 박영사, 289쪽.

17) 링크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외국의 사례로는, 1996년 Jonathan Will Ltd. v. Shetland Times Ltd. 사건과 Washington Post Co. v Total News Co. 사건이 있었으나, 전자는 저작물의 침해와 링크의 침해가 결부된 것으로서 직접적인 링크의 저작권 침해를 판단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후자는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에 당사자가 화해를 함으로써 사건이 종결되었다.

“

인터넷상의 저작물 이용은

다종·다양한 저작물을 신속히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으나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얻고 싶어도 저작자 정보 또는 저작물 정보를 빨리 알 수 없다면  
저작권 침해로 이어지기 쉽다.

”

이때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얻고 싶어도 저작자 정보 또는 저작물 정보를 빨리 알 수 없다면 저작권 침해로 이어지기 쉽다. 한편으로 저작자는 저작권 등록을 통해 자신의 저작물을 일반 공중에게 공개함으로써 자신의 저작물의 이용 증대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다종·다양한 저작물을 신속히 이용할 필요가 있는 인터넷 시대에는 자신의 저작물의 존재를 널리 알리는 것이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홍보 효과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저작권 등록은 건전한 인터넷 사회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저작권 침해 예방적 효용을 가지는 한편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홍보 효과도 가진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저작권 등록에 대해서 저작권법은 강력한 법적 보호를 부여하고 있다.<sup>18)</sup> 크게 추정적 효력과 대항적 효력이 저작권 등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추정적 효력은 등록 사항이 사실상 추정되는 것으로 소송법상의 입증 책임 전환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입증 책임 전환의 역할을 하는 저작권 등록의 추정적 효력은 실제로 저작자 등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거나 저작 재산권의 보호기간의 기산점이 문제되는 경우 그리고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아주 유용한 효력을 발휘한다.

첫째, 저작권 등록의 추정적 효력은 저작자가 누구인가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유용한 효력

을 발휘한다. 구체적인 경우에 어느 저작물의 저작자가 누구인가를 다른 사람은 알기 어렵고 또 설사 저작자 자신이라고 해도 그가 진정한 저작자임을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 그러나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저작자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저작권 침해가 행해진 경우 저작자는 침해자에게 저작권 침해를 이우로 하는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저작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권리자로서 인정되고, 형사 구제를 위해 고소를 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인 고소권자의 추정에도 대해서도 저작권 등록은 효력을 미치게 된다.

둘째, 저작권 등록의 추정적 효력은 저작 재산권의 보호 기간이 기산점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유용한 효력을 발휘한다. 저작권 등록을 하게 되면 창작 연월일 또는 최초 공표 연월일도 추정되는데, 공표 시를 기준 시점으로 하는 저작 재산권 보호 기간은 등록된 최초 공표 연월일의 다음해부터 기산하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용자는 저작 재산권자와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할 때 등록일만 확보해 보면 저작 재산권의 존속 여부를 쉽게 파악하고 또 이를 신뢰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저작권 등록의 추정적 효력은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더욱 유용한 효력을 발휘한다. 소송

18) 2000. 1. 12. 개정 저작권법 제 51조 및 52조 참조

법상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도 권리자가 침해자의 침해 행위에 최소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지만, 등록된 저작물이 침해된 경우 저작권법은 침해자의 침해 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등록된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침해자가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대항적 효력은 유체 재산과 마찬가지로 권리변동의 대상이 되는 저작권의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권리 변동 사항은 등록을 하지 않아도 당사자간에는 효력을 발생하지만, 제 3자에게까지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은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양도인이 양도를 하고 난 뒤 다시 타인에게 이중 양도 또는 이용 허락을 하거나 질권 설정 또는 처분 제한을 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이용 행위를 하더라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제 3자에게는 권리 주장을 할 수 없어 낭패를 당하게 된다. 저작권 등록의 대항적 효력은 이러한 경우를 위해 저작 재산권의 양도 등에 관하여 부동산의 물권 등기와 유사하게 등록에 의한 공시 제도를 규정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인터넷의 지속적인 보급과 발달에 따라 앞으로 저작권 등록 정보는 저작자·저작물·이용 조건 정보 등을 담게 될 저작권 권리 관리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게 된다면 이용 허락을 얻는데 있어서 시간적·절차적 어려움은 해결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문제로 행해지는 저작권 침해는 예방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종·다양한 저작물의 신속한 이용을 필요로 하는 인터넷 시대의 특성에 맞추어 이용 허락도 시간적·절차적으로 간이하게 행해져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만 저작권 침해 행위가 근절될 수 있고 건전한 인터넷 사회가 형성되어 우리 주변에 풍부한 양질의 창작물이 자리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

해서는 모든 저작물에 대한 정보가 저작권 등록을 통해 공시될 필요가 있고, 공시된 저작권 등록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일반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할 것이다.

#### IV. 맺음말

21C는 지식 기반 산업 시대이다. 문화 콘텐츠 산업의 국제 시장 규모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경쟁력 있는 문화 콘텐츠의 개발과 양산을 위해서는 법 및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나라는 2000. 1. 12.에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저작 재산권에 전송권을 추가함으로써 컴퓨터 통신 등에 의한 전송으로부터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권 등록 조항을 강화하여 등록의 효용성을 높였다. 또한 지난 2001. 4. 6.자로 문화관광부에서는 지식 정보화 사회로의 진전에 발맞추어 데이터 베이스, 디지털 콘텐츠 등에 창작성이 없는 편집물에도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불법 복제로부터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범위를 규정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이 개정안이 실현된다면 우리 나라도 문화 콘텐츠 산업을 보호하고 저작자도 보호되는 발전적인 법이 되리라 생각한다. **김영**

#### 이길용

성균관대, 연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문화체육부 예술진흥국장, 국립중앙극장장, 문화관광부 종무실장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며, 한국소설가협회 중앙위원, 한국회곡작가협회 부회장, 한국문인협회 회원, PEN 클럽 회장이기도 하다. 저서로는 소설 "중착역의 표상인", "숨쉬는 하늘"과 희곡 "어찌고 활아버지와 늑새비림", "거북선이 돌아라" 등이 있다.